

화물유통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I. 화물유통촉진법	II.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III.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p>第3章 複合運送周旋業</p> <p>第8條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 ① 複合運送周旋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定하는 外에 依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船舶 또는 航空機만을 利用하는 運送周旋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者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法5110, 99·2·5></p> <p>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複合運送周旋業者"라 한다)가 그 登錄한 事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定하는 外에 따라 변경 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定하는 경미한 事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新設 95·12·29 法5110)</p> <p>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고 자 하는 者는 資本金등 大統領令이 定하는 登錄基準을 갖추어야 한다.<改正 2000·1·28></p>	<p>제11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전문개정 2000·7·27]</p> <p>제12조 삭제 <2000·7·27></p>	<p>제2장 복합운송주선업</p> <p>제3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27, 99·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6·7·27, 99·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p>제4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①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격사유유무와 당해 신청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6·7·27, 99·2·9></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복합운송주선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9·2·9></p> <p>제5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변경등록) ①복합운송 주선업자가 법 제8조제2</p>

자 · 료 I

<p>第9條 削除 <95·12·29 法5110></p> <p>第10條 (登錄의 缺格事由) ①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93·3·10, 99·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이 法,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鐵道小運送業法, 航空法 또는 海運法에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3.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法人으로서 그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을 경우 <p>②削除 <2000·1·28></p> <p>第11條 내지 第13條 削除 <95·12·29 法5110></p> <p>第14條 내지 第17條 削除 <99·2·5></p> <p>第18條 (사업의 承繼) ①複合運送周旋業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합병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p>	<p>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複합운송주선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27, 99·2·9></p> <p>②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임원(대표이사를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6·7·27, 99·2·9></p> <p>제6조(등록의 이관) 시·도지사는 複합운송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9]</p> <p>제7조 내지 제9조 삭제 <99·5·29></p> <p>제10조 (사업승계의 신고) ①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複합운송주선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양도·양수신고서를, 상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속신고서를, 複합운송주선업자인 법</p>
---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法5110>
 ③第1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相續人이 第10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相續日부터 3月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할 수 있다.

第19條 (사업의 休止·廢止) ①複合運送周旋業者는 複合運送周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

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법인 합병신고서를 그 권리·의무의 승계일부터 7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27, 9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27, 99·2·9>

1. 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경우
 - 가.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 나.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다. 양수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 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수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의 상속신고의 경우
 - 가.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나. 신고인과 동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 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라.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3.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 다.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 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라.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 마.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 (사업의 휴지·폐지등 신고)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휴지·폐지신고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p>· 29 法5110></p> <p>②複合運送周旋業者인 法人이 合併의 사유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에는 그 清算人(解散이 破産에 의한 경우에는 破産管財人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110></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止期間은 6 月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複合運送周旋業者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營業所 기타 一般公衆이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第20條 (登錄의 取消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複合運送周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1號의2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法5110, 2000·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第10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 <p>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相續을 개시한 날 또는 第10條 第4號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月은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事業者의 지위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10條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 法人이 第10條第4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の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法5110, 99·2·5></p> <p>第21條 (複合運送周旋業協會) ①複合運送周旋業者는 複合運送周旋業의 건전한 발전과 複合運送周旋業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協會(이하 "複合運送周旋業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p>	<p>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휴지·폐지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지·폐지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개정 96·7·27, 99·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p>제13조 (협회의 설립) ①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자는 법 제21조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전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6·6·29, 2000·7</p>	
---	--	--

자 • 료 I

<p><改正 95·12·29 法5110> ②複合運送周旋業協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5分の 1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당해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자 3分の 1이상이 出席한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法5110, 99·2·5> ③複合運送周旋業協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를 받아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改正 95·12·29 法5110> ④複合運送周旋業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110> ⑤複合運送周旋業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 외에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 法5110> ⑥複合運送周旋業協會의 業務 및 定款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法5100></p> <p>第22條 (資金의 지원) 政府는 複合運送周旋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複合運送周旋業者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所要資金의 融資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 27>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협회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7인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建設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 1444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 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서 5. 창립총회 회의록 <p>제14조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 3조제2항제3호의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p>제15조 (업무)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6·6·29, 2000·7·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합운송주선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복합운송주선업 또는 화물터미널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 복합운송주선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p>4의2. 建設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	--

<p>第9章 補 則</p>		<p>제7장 보 칙</p>
<p>第49條 (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複合運送周旋業協會등 物流와 관련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2000·1·28></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를 수행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9·2·5, 2000·1·28></p> <p>[全文改正 99·12·29 法5110]</p>	<p>제16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3·7·26, 94·12·23 대령14447, 96·6·29, 96·8·8, 97·12·31, 98·12·31, 99·5·10, 2000·7·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 주선업의승계신고의 수리 1의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휴지·폐지 신고의 수리 1의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삭제 <96·6·29> 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 가·변경인가,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5. 삭제 <99·5·10> 6. 내지 8. 삭제 <96·6·29> 9. 삭제 <99·5·10> 10. 삭제 <96·6·29> 11.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1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자에게 준용되는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와 시·도단위의 협회 설립인가 13. 삭제 <2000·7·27> 14. 삭제 <99·5·10> 15. 및 16. 삭제 <96·6·29> 17. 및 18. 삭제 <2000·7·27> 19.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 및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0. 법 제5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21.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p>제37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개정 2000·8·8></p>

<p>第50條 (登錄證貸與등의 금지) 이법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 또는 資格을 취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 또는 資格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12·29 法 5110, 99·2·5></p> <p>第51條 (過徵金) ①建設交通部長官은 複合運送 周旋業者 또는 複合貨物 터미널事業者가 第20條 또는 第35條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事業停止處分에 相當하여 1千萬원이하의 過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 5110, 99·2·5, 2000·1·28></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그 程度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 다만, 第20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이 第49條의 規定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市·道知事が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바에 따라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 <改正 95·12·29 法5110, 97·12·13 法 5454, 99·2·5, 2000·1·28></p>	<p>복합운송주 선업자 및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 제2호·제4호(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에 한한다)·제11호·제12호(사업의 승계·휴지·폐지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와 협회설립의 인가에 한한다)·제19호·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5·10, 2000·7·27></p> <p>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금액등) 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6·6·29></p> <p>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8·12·31></p> <p>제1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건설교통부 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p>	
--	--	--

	<p>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p> <p>제19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건설교통부 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94·12·23 대령 14447>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p> <p>제20조 삭제 <97·12·31></p> <p>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건설교</p>	
--	--	--

<p>第52條 (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2.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3. 削除 <2000·1·28> 4. 第48條의16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의 取消 <p>[全文改正 97·12·13 法5453]</p> <p>第53條 (手數料)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 登錄을 申請하는 경우 建設交通部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110></p> <p>第54條 (적용제외) ①削除 <2000·12·29></p> <p>②관세법 제183조의 規定에 의한 保稅倉庫에 대하여는 第5章의 規定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6·8·14, 2000·12·29></p> <p>[全文改正 95·12·29 法5110]</p> <p>第10章 罰 則</p> <p>第54條의2 (罰則) ①第48條의7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流電算網에 의한 電子文書를 僞作 또는 變作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僞作 또는 變作된 電子文書를 행사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本條新設 95·12·29 法5110]</p> <p>第54條의3 (벌칙) 第48條의7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流電算網에 의</p>	<p>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횡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p> <p><개정 94·12·23 대령14447, 96·6·29></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p>	<p>제38조 (수수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96·7·27></p> <p>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p>
---	--	---

하여 처리·보관 또는 傳送되는 物流情報를 훼손하거나 그 秘密을 침해·盜用 또는 누설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5·12·29 法5110]

第54條의4 (罰則) 第48條의7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流電算網의 保護措置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5·12·29 法5110]

第5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法5110, 2000·1·28>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複合運送周旋業을 經營한 者
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을 經營하는 者
3. 第48條의7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者

第55條2 (罰則) 第48條의8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를 공개한 者는 1千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5·12·29 法5110]

第5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5>

1.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한 사항을 變경한 者
2.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한 사항을 變경한 者
3.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工事を 施行한 者
4. 및 5. 削除 <99·2·5>
6.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姓名 또는 商號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登錄證 또는 資格證을 貸與한 者

[全文改正 95·12·29 法5110]

第5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5條 또는 第5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5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95·12·29 法5110, 99·2·5, 2000·1·28>

1. 第3조제4項의 규정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2. 第18條(第38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19條(第38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削除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第49條의 規定에 따라 權限이 委任 또는 委託된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2·29 法5110, 97·12·13 法5454, 99·2·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110>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95·12·29 法5110>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별표 1] <개정 2000·7·27>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제11조관련)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인 경우 자본금이 3억원이상, 개인 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6억원이상일 것
보증보험 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 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 임보험에 가입한 경우